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838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187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46,047,6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는 [redacted]경찰청의 청사 신축에 따른 사토장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토장은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대 토지로서 이에 관한 비용 또한 사업 주체의 부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주체인 [redacted]경찰청장이 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에 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인이 아니라 공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통칭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재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질, 조세법령 엄격 해석의 원칙, 구 지방세법 제19조 제1항과의 관련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관한 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준하는 정도로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인천지방경찰청 신규 청사부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가 아니고, 단지 신규 청사 신축 공사에 필요한 사토·기계 장비 적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경찰업무 등 인천지방경찰청장 자신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